



金 治 東  
〈체신부 정보통신과 계장〉

#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(안)의 제안설명

## 1. 제정배경

- 전산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경제적인 전산망 구축과 전산망자원의 공유필요
-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전산망의 신뢰성과 안전성 대책필요
- 국제표준화 및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산업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확보

## 2. 제정원칙

-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
-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이 고시사항으로 유도
- 국가기간전산망, 사업용전산망, 자가전산망으로 구분하여 적용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전산망의 활성화 및 이용촉진 도모
- 통신관련 분야는 규정의 중복 및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 기술기준 준용

## 3. 제정방향

### 가. 검토대상

- 망과 기기의 연동 및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
  - 고려사항
    - 급격한 기술발전 추세와 국제표준화 동향의 고려
    - 연동,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전산망 기술발전과의 조화
  - 대 책
    - 국제표준화 추세와 국내의 현 기술수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
    - 최소한의 강제사항, 권고사항을 분리 추진
    - 합리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기회 부여
- 전산망의 안전, 신뢰성

### 고려사항

구 분	단 말	망	컴퓨터(CPU)	데이터베이스
고 려 사 항	인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허가 사용</li> <li>• 부정 억세스</li> <li>• File의 부정이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송방해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정조작등</li> </ul>
	물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H/W</li> <li>S/W</li> <li>부대설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 고장 및 복구</li> </ul>	
	자 연	자연재해, 환경장애		

## 대 책

- 국가기간전산망 및 사업용전산망에 최소한도로 확보해야 할 안전, 신뢰성 대책강구
- 전산망의 설비와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체신부장관의 고시 사항화

## 나. 제정방향

- 전산망 내부 또는 전산망간의 연동, 호환성 확보 및 안전, 신뢰성을 중심으로 제정
- 호환성, 연동성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, CCITT 등의 표준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현기술수준과 실정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수용방안을 고려하여 제정
-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S/W의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신에 이용되는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제정

## 4. 추진일정

- '86. 9 - '86. 12 기술기준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(5차)
- '87. 1 - '87. 3 기술기준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(체신부)
- '87. 3 - '87. 4 기술기준에 적용될 범위확정(체신부)
- '87. 5 - '87. 8 기술기준 전담반을 한국전산원에 운영하여 초안작성(체신부, 한국전산원, 통신공사, 데이콤, SERI, ETRI 전문가 참여)
- '87. 9 - '87. 12 기술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한 수정보완
- '88. 1 - '88. 2 체신부 초안확정
- '88. 3 정부, 관련업계, 학회 의견수렴 및 관보에 입법예고
- '88. 4 체신부안을 기초로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(체신부, 전산원, 정보통신진흥협회, 정보산업협회 회원사 각 2인과 데이콤, KIA 등이 참여)
- '88. 5 전문가 의견수렴(학계, 연구소, 업계 등)
- '88. 7 공청회 개최



宋 官 浩  
(한국전산원선임연구원)

##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(안)의 조문 설명

### 1. 전산망기술기준의 개요

#### 가. 제정원칙

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(기술기준의 제정)

- 1)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.
- 3)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,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